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성범죄자 점검·확인결과 공개 및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(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)

나. 지역주민이 쉽게 알도록 하고 점검·확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자 점검·확인결과를 점검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는 한편, 공개기간의 상한을 정함(안 제27조제1항)

다.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

- 1) 기소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소년부 송치 건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29조제1항)
 - 아동·청소년에게 협박, 강요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9조제2항)
 - 주관적이고 모호한 신고포상금 신청 시기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로

함(안 제30조제1항)

- 중복·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환수규정 보완(안 제32조4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3항 전단 중 “운영 또는 취업”을 “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전단 중 “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·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”를 “점검·확인한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점검·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 기관의 점검·확인결과를 종합하여 제19조의 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 현황 등을 공표할 수 있다.

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취업하고”를 각각 “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기소되거나”를 “기소 또는”으로, “받은”을 “받거나 「소년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아동·청소년에게 협박, 강요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

신고한 경우

제30조제1항 중 “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”을 “수사기관에 신고한”으로 한다.

제3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중복·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성범죄의 경력자 점검·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·확인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청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성범죄의 경력 조회) ① · ② (생 략)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 은 아동 · 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<u>운영 또 는 취업</u> 이 제한되는 사람(이하 “취업제한대상자”라 한다)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 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. ④ (생 략)	제25조(성범죄의 경력 조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운영하거 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7조(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· 확 인 결과 공개) ① 법 제57조제1 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 · 도 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점검 · 확인(이하 “점검 · 확인” 이라 한다) 결과를 그 점검 · 확 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	제27조(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· 확 인 결과 공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·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.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.

②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·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
3.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
4.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[주소는 시(「제주특별자치

점검·확인한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-----. 이 경우 점검·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 기관의 점검·확인결과를 종합하여 제19조의 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 현황 등을 공표할 수 있다.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-----

3. -----
-----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-----

4. -----
--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-----

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
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
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 · 군
·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
같다)까지로 한다]

제29조(포상금의 지급 기준) ①
법 제59조에 따른 신고(고소 ·
고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
대한 포상금은 범 죄를 저지른
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
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
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
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제30조(포상금의 지급 절차) ①
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
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
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

제29조(포상금의 지급 기준) ① -

--- 기소 또는 -----
-- 받거나 「소년법」 제4조제
2항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된 --
--.

② -----

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아동·청소년에게 협박, 강요
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집한
증거로 신고한 경우

제30조(포상금의 지급 절차) ① -

----- 수사기관에 신고
한 -----

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 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 ② (생 략) 제32조(포상금의 환수) 여성가족 부장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32조(포상금의 환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중복·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416